

부산지방법원 2022. 7. 13 선고 2021나6712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2. 7. 13 선고 2021나67121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0가단336751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부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정석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윤표

변론 종결2022. 6. 15.

판결 선고2022. 7. 13.

제1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0가단336751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A 사이에 2020. 3.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18,770,53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8,770,531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 공동피고 A에 대하여는 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7행의 '2017. 3. 20.'을 '2020. 3. 20.'으로 고치는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서호원

판사이은명

판사정일예

별지